

[양식]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

주식회사 ○○○○ 대표이사 _____ 와 근로자대표 _____ 는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합의서는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자) 이 합의서의 내용은 전체 ○○직 근로자에 적용한다.

제3조(단위기간) 이 합의서의 단위기간은 매분기 초일부터 매분기 말일까지로 한다.

제4조(근로시간)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에 있어서 1일의 근로 시간, 시업시간, 종업시간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.

구분		1 일 근로시간	시업시간	종업시간	휴게시간
월	일				
○월	1 일~말일	7 시간(월~금)	9:00	17:00	12:00~13:00
○월	1 일~말일	8 시간(월~금)	9:00	18:00	12:00~13:00
○월	1 일~말일	9 시간(월~금)	9:00	19:00	12:00~13:00

제5조(휴일) 단위기간 중 주 2일(토 . 일요일)은 휴무하되, 휴일은 일요일로 한다.

제6조(적용제외) 연소근로자(15세 이상 18세 미만)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본 합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7조(연장근로 가산임금) 근로일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 통상임금의 50%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한다.

제7조(연장 . 야간 . 휴일근로) 연장 . 야간 .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취업규칙 제○○조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한다.

제8조(유효기간) 이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20〇〇년 〇월 〇일부터 1년간으로
한다, 유효기간이 변동되는 경우 본 합의 대상자의 협의를 거친 후 진행한다.

20〇〇. . .

주식회사 〇〇 대표이사 (인) 근로자대표 (인)